

[양식 제1호]

[様式第1号]

출생신고서 出生届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に沿って記載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년 월 일) (年 月 日)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 本貫 (한자) (漢字)	*성별 *性別	①남 ①男	*①혼인중의 출생자 *①婚姻中の出生者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②여 ②女	*②혼인외의 출생자 *②婚姻外の出生者
①출생자 ①出生者	*출생일시 *出生日時	년 월 일 시 年 月 日 時	분(출생지 시각: 24시간제) 分(出生地 時間: 24時間制)			
	*출생장소 *出生場所	①주택 ②병원 ③기타 ①自宅 ②病院 ③その他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父母が決めた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세대주 및 관계 世帯主及び関係	의 の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子が重国籍者である場合、その事実及び取得した外国の国籍					
②부모 ②父母	부 父	성명 氏名	(한자:) (漢字:)	본(한자) 本貫(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모 母	성명 氏名	(한자:) (漢字:)	본(한자) 本貫(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②父 母	*부의 등록기준지 *父の登録基準地					
	*모의 등록기준지 *母の登録基準地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婚姻届出の際、子の姓・本貫を母の姓・本貫とする協議書を提出しましたか。はい <input type="checkbox"/> いいえ <input type="checkbox"/>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③親子関係の不存在確認判決等による家族関係登録簿の閉鎖後、再び出生届出をする場合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閉鎖登録簿上の特定事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④기타사항 ④その他の事項						
⑤신고인 ⑤届出人	*성명 *氏名	(인)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자격 *資格	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자격:) ①父 ②母 ③同居親族 ④その他(資格:)				

	주 소 住所			
	*전 화 *電話	이메일 電子メール		
⑥ 제출인 ⑥ 提出人	성 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が記載されるようになっ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アステリスク(*)がつけられた資料**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基づき誠実に答え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は固く守られますので、事実通りに記入してください。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添付書類及び出生者の父母の国籍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向調査	
㉠ 최종 졸업학교 ㉠ 最終學歷	부 父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學歷なし ② 小学校 ③ 中学校 ④ 高等学校 ⑤ 大学(校) ⑥ 大学院以上
	모 母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學歷なし ② 小学校 ③ 中学校 ④ 高等学校 ⑤ 大学(校) ⑥ 大学院以上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下記の事項は届出人は記載しません。

읍면동접수 役所受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家族関係登録官署への送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受付及び処理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년 월 일(인) 年 月 日(印)	

작성방법 作成方法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欄: 出生者の名前に使用する漢字は大法院規則において定められている範囲内のもの(人名用漢字)とし、名前は5文字(姓は除く)を超えてはなりません。使用可能な人名用漢字は大韓民国法院電子民願センター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出生日時は24時間制で記載します(例:午後2時30分→14時30分).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

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韓国の国民が外国で生まれた場合にはその出生した国の時間を西暦及び太陽暦で記載し、サマータイムが実施されている時に生まれたらその出生地の時間の横に「(サマータイム適用)」と表示します。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子が重国籍者である場合、その事実及び取得した国籍を記載します。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出生場所は最小行政区画の名称(市・区の「洞」、邑・面の「里」)又は道路名住所の「道路名」まで記載してかまいません。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②欄: 父に関する事項-婚外の出生者を母が届出する場合は記載せず、前婚解消後100日以内に再婚した女性が再婚成立後200日以後、直前婚姻の終了後300日以内に出産して母が出生届を出す場合は父の氏名欄に「父未定」と記載します。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③欄: 親子関係不存在確認判決、嫡出否認判決等で家族関係登録簿を閉鎖した後、再び出生届を出す場合に限り記載します。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欄: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後順位の届出義務者が出生届を出す場合:先順位者(父母)が届出できない客観的な理由(例:父母の死亡、行方不明など)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出生前に胎児認知した事実及び胎児認知を届出した官署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外国で出生した場合:現地の出生時間を韓国時間に直し出生日時を記載します。その現地の出生時間がサマータイムの適用された時間である場合にはそれに関する事実を記載します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外国人である父の姓に従い、外国式の名前で外国の登録官署に登録されているが韓国式の名前で出生届出する場合:外国で届出た氏名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⑥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④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④欄: 教育部長官が認める全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載し、各学校の在学者又は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例示> 大学3年生在学(中退) → ④高等学校に「○」印をつける。

첨 부 서 류
添付書類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1. 出生証明書など1通(下記のうち、一つ)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医者や助産者が作成した出生証明書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医者や助産者でない人として分娩に直接関わった者が母の出産事実を証明する資料などを添付して作成した、出生事実を証明する書面(家族関係登録例規第501号別紙書式)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国内又は外国の権限のある機関で発行された、出生事実を証明する書面(外国語の場合は翻訳文添付)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家庭法院の確認書謄本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下記の第2項及び第3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出生者の父又は母の婚姻関係証明書1通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父が婚外の子の出生届出をする場合には必ず母の婚姻関係証明書を添付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 出生者の母の家族関係登録簿がなかったり登録されているかどうか定かでない人の場合はその母が人妻(有夫女)ではないことを公証する書面又は 2人以上の証人による保証書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3. 子の出生当時、母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例:母の基本証明書)1通(1998.6.14.以降に外国人の父と韓国人の母の間で出生した子の出生届出をする場合)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4. 子の出生当時に大韓民国の国民である父又は母の家族関係登録簿がなかったり明確ではない人の場合には父又は母に関する氏名、生年月日など人的事項を記した韓国の官公署が発行した公文書写し1部(例:パスポート、住民登録謄本、その他の証明書)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子が重国籍者である場合、取得した国籍を疎明する資料1部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6.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及び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は、第6項の書類以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一緒に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